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 철 원*

< 目 次 >

1. 서 론
2. 우주정거장의 약사
3. 협력조약체결 절차와 관련된 문제
4. 지구와 관련된 활동
5. 손해배상
6. 우주정거장의 관할권 문제
7. 결론

1. 서 론

우주정거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용 인간이 우주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주공간에 설치된 거대한 인공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¹⁾ 우주정거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의 우주활동과 구별되는 특징중의 하나는 누구의 영유에도 속하지 않는 우주공간에 인간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에서는 기존의 우주물체에서 보다 훨씬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그 작업의 범위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점 확대되고 있다.²⁾ 이러한 우주정거장의 임무와 목적달성을 위해

* 韓國航空宇宙法學會 理事, 崇實大學校 法學科 教授

1) European Space Agenc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pace Activities in Europe*, sp-1209 (ESA Publisher Division: Noordwijk, Feb. 1997), p. 4.

2) NASA의 前소장이었던 James M. Beggs은 우주정거장이 ① 과학실험과 기술발전을 위한 우주실험소, ② 아래로는 지구를 외부로는 우주를 관찰하는 영구적인 관측소, ③ 화물과 운송기기가 도착하고 처리하며 그들의 목적지로 발진하는 수송시설, ④ 화물과 운송기기

서는 우주정거장은 거대한 구조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막대한 재원의 소요와 함께 각국의 예산절감 노력때문에 우주정거장계획은 종래의 어떤 문제보다도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 건설될 우주정거장에서는 여러나라의 국민이 같이 거주하면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³⁾

이러한 우주정거장의 국제적 성격과 우주공간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인간거주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우주정거장계획은 새로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우주법에는 단발적인 우주선이나 무인 인공위성과는 달리 장기간 인간이 거주하고 대규모적인 건설이 필요한 우주정거장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ISS)⁴⁾ 계획의 참가국들은 우주정거장에 관한 정부간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Space Station, 이하 IGA)⁵⁾과 여러 가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를 체결하여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문제를 규율하고 있

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하는 지원시설, ⑤ 대규모 구조물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조립공장, ⑥ 다음 발진을 위하여 화물과 부품을 궤도상에 보관하는 저장시설, ⑦ 지원장비를 조립하여 상업적 기회를 증대시키는 생산시설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정의하였다. Civil Space Station - Senate Hearing 98-523, before the Sub-Committee on Science, Technology and Space of 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98th Congress, 1st Sess. 15 November, 1983, serial No. 98-48 (US GPO Washington D.C., 1984). ISS계획의 일환으로 일본과 캐나다의 정부기관, ESA와 미국이 체결한 우주정거장에 대한 양해각서에서는 위에서 든 기능 외에 “영구적인 달기지, 화성 유인우주선, 유인우주탐사, 지구정지궤도에서의 유인과학통신 설비, 그리고 무인천체탐사와 같은 미래의 임무를 위한 본부”를 우주정거장의 기능에 추가하였다. ESA홈페이지에서는 현재 건설중인 ISS의 기능으로 다양한 (물리, 화학, 인간정신, 우주과학, 지구과학을 포함) 연구소, 대규모 관측소, 혁신적인 실험센터, 우주공간의 영구적 거점과 지구궤도를 벗어난 우주의 인간개발을 위한 초석을 그 기능으로 들고 있다. <http://www.estec.esa.nl/spaceflight/iss.html>.

3) ESA Home Page, Ibid.

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nfra* notes 11-14에 따른 본문참조.

5) IGA는 ESA회원국, 캐나다, 일본 등 ISS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우주정거장의 건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기본틀로서 만들어진 협정이다. 우주정거장 각 부분의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주정거장의 각 부분과 그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관할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손해배상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88년 9월 29일 Washington D.C.에서 체결되었다. See for the text, Proceedings of the Colloquium on Manned Space Station - Legal Issues, 7-8 Nov. 1989, ESA SP-305, ISBN 92-9092-062-9, Jan. 1990.

다. ISS는 현재 국제적인 협력하에 건설되고 있는 유일한 우주정거장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체결된 IGA와 MOU는 이 계획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국가들이나 혹은 새로운 국제적 우주정거장 계획을 추진하려는 국가에게 중요한 선택이 된다. 그런데 ISS계획과 관련하여 체결된 IGA와 MOU에는 기존의 우주법체제와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본고는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에 적용되는 현재의 법체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고는 상세한 법체제의 개선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그치고 보다 완벽한 작업은 우주정거장 활동과 관련된 경험의 축적이 더 있는 후의 연구로 미룬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논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우주정거장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선진국이 ISS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들의 주체와 그 효력상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앞으로의 우주정거장 건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들 국가와 협력조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조약의 체결절차와 그 효력상의 문제를 알아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지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활동의 문제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인 손해배상체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우주정거장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에 어느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우주정거장의 관할권문제를 검토한다.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사례인 우주정거장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 문제도 제6장에서 함께 살펴본다.

2. 우주정거장의 약사

우주공간에 준영구적으로 인간이 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정거장이라는 개념은 1928년 유럽의 기술자인 Hermann Noordung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이것이 최초로 실현된 것은 1971년 구소련이 발사한 Salyut-1⁶⁾이다. 이 우주정거장은 1971년 4월에 발사되어 동년 10월에 궤도를 이탈하여

6) See e.g. *Manned Space Stations*, ESA Publication SP-1137, Nov. 1990, p. 74; *Cambridge Encyclopedia of Space*, ed. M. Rycroft, (Cambridge etc., 1990), pp. 268-270.

대기중에서 연소하였다. 그 기간동안 인간은 24일간 우주정거장에서 거주하였다. 구소련의 Salyut 우주정거장의 마지막인 Salyut-7은 1982년 4월에 발사되어 1984년까지 237일의 인간체류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정거장은 1986년에 폐기되어 1991년 아르헨티나 상공에 통제되지 않은 채로 진입하였다.⁷⁾

미국은 1973년 5월에 Salyut의 약 2배에 달하는 Skylab을 발사하였다. Salyut는 우주선이었던 Soyuz를 개조해 만들어진 것이었던 반면에 Skylab은 처음부터 우주정거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Skylab은 1980년 6월에 대기중에 진입해 그 파편이 호주에 떨어졌다.⁸⁾ 이때까지 유인우주선이 3번 방문하였으나 Skylab이 운영되던 대부분의 기간은 Salyut들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유럽은 1983년 11월 첫 번째 Spacelab을 미국의 우주선에 실어 발사함으로써 우주정거장 경쟁에 참가하였다. Spacelab도 역시 대부분의 기간을 無人인 상태로 지냈다. 이와 같이 이때까지의 우주정거장들은 모두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우주에 존재하였고 그 생애의 대부분을 인간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으므로 인간의 영구적인 우주거주를 향한 우주정거장 계획의 첫단계에 머물렀다.⁹⁾

본격적인 우주정거장은 구소련의 Mir발사에서 시작되었다. 이 우주정거장은 1986년에 발사되어 10년이 넘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 우주인인 Valeri Polyakov박사는 1994년 1월 8일부터 1995년 3월까지 연속 14주를 포함하여 총 22주를 Mir에 머무르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Kvant1, 2 Kristal Module, 원거리탐사를 위한 Sofora안테나 등의 거대한 구조물이 지구상에서 제작되어 Mir에 도킹하거나 Mir상에서 조립되어 설치되었다.¹⁰⁾ Mir가 운영되는 동안 세계 10여개국에서 이 우주선을 방문하였다. 그 중에서도 Mir에서 제작된 Coca Cola의 광고는 우주정거장의 꿈을 전세계인에게 재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ISS계획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인간의 영구거주를 위한 우주정거장을 만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7) *Manned Space Stations*, pp. 77-78; *Cambridge Encyclopedia*, pp. 269-270; *Space News*, Feb. 11-17, 1991, p. 4, p. 21.

8) *Manned Space Stations*, pp. 78-80; *Cambridge Encyclopedia*, pp. 262-265; *Space News*, Jan. 21 - Feb. 3, 1991, p. 36.

9) *Manned Space Stations*, pp. 88-92; *Cambridge Encyclopedia*, pp. 278-283.

10) Mir에 일어난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maximov.com/Mir/mirhistory1.html>과 <http://www.osf.hq.nasa.gov/mir> 참조.

1984년 1월의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의 對의회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천명 후 미국은 주요 서방선진국들을 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였다. 1988년 9월에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이하 NASA), 캐나다우주국(Canadian Space Agency 이하 CSA), 그리고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이하 ESA)은 우주정거장 계획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ESA를 통하여 유럽국가중에는 영국과 스위스 등 11개국이 이 계획에 참가하였다. 일본정부와 NASA는 1989년 3월에 우주정거장 계획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서간의 긴장완화로 인한 우주에서의 군사경쟁 의식의 약화, 미국의 재정적자해결을 위한 노력 등으로 인하여 이 계획이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1993년 미의회는 우주정거장 건설에 매년 21억불, 총 174억불에 달하는 장기 예산사용을 승인하였다. 그 후 브라질도 이 계획에 참가하였고 1996년에는 러시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의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기로 하였다.¹¹⁾

현재 ISS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정거장은 총중량 457톤, 길이와 넓이가 각각 108미터와 80미터에 달하는 Freedom이라고 명명된 우주정거장이다. ISS계획은 3단계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1단계가 진행중이다. 1단계에는 미국우주인이 Mir에 머무르는 것과 우주왕복선과 Mir와의 도킹연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8년 2월 20일 현재 지금까지 ISS프로그램은 비행선의 주요부분의 건설, 작동과 유지, 엔진실의 개발, 우주인의 훈련, 9번의 계획중에서 8번에 걸쳐 Mir와 도킹한 우주왕복선의 운행기록¹²⁾, 2년간의 우주공간에서의 거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우주정거장 건설과 운영에 관한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 2단계는 1998년 6월 러시아의 Proton로켓에 실려 러시아가 만든 몸체가 발사됨으로써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과학조사부분의 활동이 확

11) 1996년 6월에 미국의 NASA와 러시아의 Russian Space Agency(RSA)와의 사이에 양해각서에 관한 비준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ad referendum agreement)가 있었고 다른 당사국들과 RSA사이에는 1996년 12월에 비준을 조건으로 하는 다자간 IGA가 체결되었다. 이것들은 1997년 1월 29일, Washington D.C.에서 비준되었다. 이들 양해각서와 IGA는 기존의 IGA와 법적인 문제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러시아의 참가로 인한 각 당사국의 기여분과 ISS의 이용비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1995년 2월의 최초의 성공을 시작으로 1995년 3월에는 미국우주인에 의한 최초의 도킹이 있었고 1995년 6월 1일에는 미국이 개발한 1000kg의 과학적 장비를 수송하는 도킹이 있었다. 1995년 6월 29일에는 우주왕복선 Atlantis에 의한 도킹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러시아가 만든 도킹모듈을 전달하기 위한 도킹이 있었다. 그 후 1996년 3월과 1996년 9월, 1997년 1월에는 우주인을 수송하기 위한 도킹이 있었다.

대될 것이고 미국이 만든 자료관리체제와 전기발전체제가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인간의 영구적인 거주를 위한 체계적인 장비와 시설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3단계는 최소 10년의 인간거주를 위한 시설을 완비한 우주정거장이 완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러시아가 만든 도킹시설이 발사될 것이고 일본의 실험실 모듈, ESA의 Columbus궤도시설, 이탈리아가 만든 두 개의 노드가 발사될 것이다. 2003년 미국의 인간거주모듈의 발사로 제3단계는 완결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 미국의 동력모듈과 연구시설, 러시아의 추가 과학모듈, 완전한 과학적 이용을 위한 장비들도 완성될 것이다.¹³⁾

3. 협력조약체결 절차와 관련된 문제

우주정거장 건설이 국제적 협력속에서 진행된다면 그 형태는 우주분야에서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국가와 협력조약을 체결하여 행해지는 형태일 것이다. 미국과 ESA와의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몇가지 주의할 점을 본장에서 살펴볼 도록 한다.

우선 미국이 우주개발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보자. 미국은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외국과 협정을 체결할 때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기관간의 문서교환(inter-agency agreement by exchange of letters), 기관간의 양해각서(inter-agency memoranda of understanding)라는 3가지 형태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형식을 갖춘 첫 번째 형태의 조약은 그 예가 드물고 후자의 두가지 형태의 조약이 일반적이다.¹⁴⁾ 가장 형식을 갖추어 체결되는 첫 번째 방식의 조약도 상원의 비준동의나 그 외의 의회의 권한에 근거하지 않고 체결되었다. 1958년의 NASAct¹⁵⁾의 Section 205에 의하면 우주개발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원의 비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 그러나 Eisenhower대통령은 이 법안을 서명

13) ISS Home Page, ISS Construction Phase, <http://station.nasa.gov/reference/status/phase.html>.

14) Andrew J. Young, *Law and Policy in the Space Stations' Era*, (Martinus Nijhoff, 1986), p. 77.

15) P.L. 85-568, 29 July 1958, 72 Stat. 426, 42 USC 2451.

16) ... the Administration (NASA) under the foreign policy guidance of the President, may engage in a progra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work done pursuant to this

하면서 ‘헌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이 국제협력을 위하여 간이한 형태의 조약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¹⁷⁾ 그 결과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우주조약과 관련된 조약은 상원의 비준동의없이 체결된 행정협정이었다. 그리고 그 유형도 순수한 형태의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이에 충돌하는 연방법률이 있으면 미국 행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 중 상원의 비준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하는 조약은 ‘Supreme Law of the Land’로서 연방법률과 동등한 지위가 인정된다.¹⁸⁾ 이 외에 상원의 비준동의 없이 체결되는 소위 행정협정으로 미국은 3가지 유형의 협정을 체결한다. 그 하나가 상원의 비준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체결하는 소위 조약에 따른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pursuant to a treaty)이다. 두 번째는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혹은 승인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협정을 체결하는 소위 의회적인 행정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이다. 의회의 관여없이 대통령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체결하는 소위 순수한 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이 그 세 번째이다.¹⁹⁾ 전자의 두가지 형태의 행정협정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조약에 근거하거나 혹은 上·下 兩院의 공동결의에 의한 의회의 권한위임이나 승인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는 구법률을 대체한다.²⁰⁾ 반면에 세 번째 유형의 행정협정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연방법률보다 하위에 있다. 따라서 이에 충

Act, and in the peaceful application of the results thereof, pursuant to agreement made by the President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이탤릭체는 저자 첨가)

17)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ivilian Space Activities*, OTA-ISC-239, (Washington D.C., July 1985), at 36.

“I regard this section merely as recognizing that international treaties may be made in this field, and as not precluding, in appropriate cases, less formal arrangements of cooperation. To construe the section otherwise would raise substantial constitutional questions.”

18)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of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3rd ed.), vol. 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 1987), ss 111, p. 42.

19) *Ibid.*, ss 303, p. 159.

20) *Ibid.*, ss 115, comment d, Reporter’s note 1, 2, & 4.

돌하는 연방법률이 있으면 미국 국내법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미국정부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²¹⁾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대표적인 예가 미국정부와 유럽의 우주탐사기구(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이하 ESRO)²²⁾간에 1973년에 체결된 Spacelab Agreement²³⁾의 위반이었다. 이 협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약이나 의회의 권한위임이 없었던 순수한 행정협정이었다. 이 협정의 제5조 1항은 “미국이 국제적인 계획에 따라 첫 번째 spacelab의 디자인이나 성능을 실질적으로 복제한 추가의 spacelab이나 그 부품 혹은 예비물품을 미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적절한 가격으로 이를 유럽측 파트너로부터 구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미국공군은 1979년에 우주연구소지원체제(Sortie Support System) 계획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 spacelab을 사실상 복제한 우주연구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 사실을 알게된 ESRO는 Spacelab Agreement 제5조 1항에 따라 유럽으로부터 이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공군은 국방부지출법(Department of Defence Appropriation Act of 1973)²⁴⁾을 근거로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 법률의 Section 744는 “국방성의 무기체계나 다른 군비와 관련된 연구나 개발을 위하여 미국기업이 동일한 성능의 연구나 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면 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할당된 자금을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NASA가 직접당사자가 되는 기관간의 양해각서나 문서교환의 형태에 의한 조약의 경우 우선 이것이 국제법상의 조약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미국은 NASA는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조약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⁵⁾ 그 근거로 드는 NASAct Section 108(b)(3)과 미국연방규칙집(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Title V: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Section 1201.103(a)에 의하면 NASA

21) *Ibid.*, Reporter's notes, 5.

22) 이 기구는 현재 ESA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ertain Governments Members of the 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for a Co-operative Programme concerning the Development, Procuring and Use of a Space Laboratory in Conjunction with the Space Shuttle System, concluded and entered into force on 14 August 1973, 24 UST 2049, TIAS 7722.

24) P.L. 92-570, 26 Oct. 1972, 86 Stat. 1184.

25) Young, *supra* note 14, p. 81.

의 조약체결권한은 국제조약체결에 관한 미국무성의 regulation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미국무성이 정한 규칙중의 하나는 정부기관이 다른 국가의 정부기관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미국무성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Circular 175이다.²⁶⁾ 따라서 NASA가 주체가 되어 체결되는 양해각서나 문서교환형태의 조약은 대통령이 사전에 위임한 권한에 근거하여 미국무성의 감독하에 체결되는 조약이고 미국 국내법상으로는 행정협정이다.

미국은 NASA가 주체가 되어 체결한 조약은 국제법상의 조약이지만 국내법상의 효력은 대통령이 직접 비준한 행정협정보다 가벼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방법률과 의회의 예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NASA는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체결된 양해각서의 대부분이 준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NASA의 약속은 의회에 의하여 언제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International Solar/Polar Mission과 관련하여 NASA와 ESA간에 체결된 양해각서²⁷⁾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이 양해각서는 태양계에서의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양자가 협조하여 두 개의 우주선을 개발하고 각자가 이를 하나씩 이용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이 양해각서의 제13조는 “이 양해각서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는 NASA와 ESA의 능력은 각자의 재원마련절차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양자는 이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NASA소장과 ESA사무총장이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고, 제20조는 “이 계획은 양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종료된다는 것을 양자는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미의회는 1980/81년 회계연도에 NASA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 때문에 NASA는 자기가 약속한 부분전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제18조와 제20조는 무시한 채 위의 제13조를 근거로 들면서 일방적으로 양해각서를 중지시켜 버렸다. 이 양해각서의 제13조는 NASA가 체결하는 양해각서에 관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NASA와 체결한 조약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불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26) Federal Register, vol. 38 no. 157 22085.

2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NASA and ESA on the International Solar/Polar Mission, 29 March 1979, *Basic Text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vol. II bis, part G12.

다음으로 유럽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약이 체결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자. 유럽국가들은 ESA를 통하여 우주활동을 하고 ESA는 비회원국이나 다른 기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ESA는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기관이나 국제기구와는 물론이고 비회원국 정부나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기관이나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²⁸⁾ 우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부터 보자. ESA가 그 권한에 속하는(소위 mandatory)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ESA이사회(Council)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만 있으면 된다. 우주활동과 관련되어 있지만 ESA의 목적에 들어있지 않은(소위 optional)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ESA 설립조약의 Annex III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ESA이사회에 그러한 제안이 제출되어 이사회가 제안된 계획을 수락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회원국들이 이 계획을 구체화하는 선언을 작성하는 것이다. 선언이 작성된 후 이 계획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회원국은 3개월의 양해기간 동안에 그 뜻을 선언할 수 있다. 제3 단계는 이 선언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부속서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공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세가지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에 의해 ESA와 회원국들의 해당계획에서의 의무가 정해진다. 이러한 문서를 만드는 절차 자체가 ESA협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각 문서는 해당국가의 비준없이 발효된다.²⁹⁾

위의 절차는 ESA와 그 회원국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채택하는 절차이다. 비회원국이나 여타의 국제기구가 이들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가 위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채택하는 외에 해당국가나 국제기구가 국제기구로서의 ESA와 별도의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체결에는 ESA이사의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다. 우주정거장계획의 B단계 활동과 관련하여 NASA와 ESA간에 체결된 양해각서³⁰⁾의 서문은 이 양해각서가

28) ESA 설립조약, Art. V (1), *infra* note 97.

29) ESA의 전신인 ESRO에서는 서명권한을 위임받은 ESA의 사무총장과 회원국간의 서명에 의하여 ESA가 ESA의 권한에 속하지않는 문제(special projects라고 칭하였음)에 대하여 약속할 수 있고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 비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and the European Space Agency for the Conduct of Parallel Detailed Definition and the Preliminary Design Studies (Phase B) Leading Toward Further Co-operation and Utilization of a Permanently Manned Space Station, 3 June 1985.

1985년 1월 31일자 장관급의 ESA이사회 결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4. 지구와 관련된 활동

우주정거장이 우주공간에 설치되고 장기간 우주에서 활동하게 되는 구조물이지만 이와 관련된 활동중에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그 효과가 지구상에 한정되는 것도 적지 않다. 우주정거장을 구성하는 부품과 서비스의 제공 등 건설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우주정거장에서 생산된 물건의 거래와 우주정거장에서 작업에 위한 물품의 준비 등 운영과정에서도 지구와 항상 유대관계를 지닌다. 우선 건설단계에서의 법적 문제를 보자. 우주정거장의 부분을 이루게 될 물품과 건설에 필요한 서비스의 거래는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직접적 효과도 지구상에 한정된다. 이 단계에서의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거래는 다른 일반적인 건설과 관련된 거래와 차이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우선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거래가 국내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제사법에 의해 그 준거법을 결정하면 된다.³¹⁾

다만 계약의 쌍방이 私人이 아니고 판매자나 구매자의 일방 혹은 쌍방이 정부라면 소위 국가면제(state immunity)라는 국제법원칙의 적용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이므로 비권력적 행위(jure gestionis)의 특성을 가진다.³²⁾ 따라서 법정지국이 여전히 절대적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국가

31) 많이 적용되는 국제사법의 원칙은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의 자치나 혹은 당사자가 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지의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32)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국내재판소가 이 국가에 대하여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면제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사법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소위 절대적 주권면제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소위 주권적행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만 면제가 인정되고 비주권행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제한적 주권면제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崔泰鉉, 外國과 私人間的 분쟁에 대한 國內法院의 管轄權에 관한 研究 -國家免除의 制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1) 참조.

면제에 의해 재판관할권은 부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국가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면제문제가 다시 제기된다.³³⁾ 강제집행은 해당국가에 특정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러한 국가와 상업적 거래를 하는 회사나 다른 국가는 그들과의 계약상 의무가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주정거장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부품을 발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 우주물체의 발사는 그 공급측면에서 보면 우주활동중에서 가장 상업화되고 민영화된 영역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NASA를 제외하고도 오래전부터 Martin Marietta, Hughes, McDonnell Douglas와 같은 사기업이 자신들의 로켓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유럽은 반사영화된 회사인 Ariespace사를 설립하여 상업적 발사서비스를⁴⁾ 제공하여 왔다. 구소련공화국과 중국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발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우주정거장의 부품을 발사한다면 그 용역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법원칙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즉 국내적인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국내법을 통하여, 국제적인 계약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을 통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³⁴⁾

그런데 우주정거장의 발사와 관련해서는 상업적인 발사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왜냐하면 우주정거장사업의 단기적인 이익이나 장기적인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급자측에서 상업적 동기로 발사서비스에 참여할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수요자측에서도 기술적 신뢰성이 낮다는 것과 우주정거장 계획은 복잡하므로 가능하면 단순한 명령구조를 원한다는 것때문에 상업적인 발사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³⁵⁾ 실제로 ISS계획에서도 발사될 우주정거장의 부품은 각국의 우주기관을 통해서 발사될 것이고 구

33) 국가면제에서 재판관할권의 면제와 강제집행관할권의 면제는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비권력적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국내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강제집행관할권의 면제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면제의 예외는 재판관할권 면제의 예외보다 인정받기 어렵다. 상세한 내용은 *Ibid.*, pp. 207-221 참조.

34) Fans von der Dunk, "Pandora's Box? The Basic Legal Framework for Doing Business with a Space Station: An Inventory of Problems," in *Legal Aspect of Space Commercialization* (K. Tatsuzawa ed.), (ICP Japan: Japan, 1992), p. 122.

35) *Ibid.*

체적으로는 미국의 우주왕복선을 이용하여 수송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구조조정과 예산삭감의 분위기로 인해 우주정거장 계획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면 상업적 발사서비스의 이용이 심각하게 고려될 수도 있다.

한편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상업적인 발사서비스는 다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할 수도 있다. 우주정거장으로의 여행이나 우주정거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기업이 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Coca Cola는 이미 러시아의 Mir를 방문하여 광고를 찍었고 일본의 방송인도 Mir를 방문하였다. Freedom 우주정거장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상업적 발사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다. 발사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사인인가 공공기관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규율하는 법원칙은 동일하다.³⁶⁾ 우주정거장에서 생산된 물건의 거래와 우주정거장에서의 작업을 위한 물품의 준비를 위한 거래에도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다른 법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손해배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위의 지구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과 다른 법원칙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그것이 동일국적을 가진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해결된다. 만약 양당사자가 다른 국적을 가지거나 혹은 불법행위지가 외국인 경우와 같이 국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국제사법에 의해 그 준거법이 지정되어 적용된다.³⁷⁾ 그런데 우주정거장의 건설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주법과 그리고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특별한 국제법상의 제한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우선 우주정거장 외부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 즉 외적인 손해와 우주정거장 내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 즉 내적인 손해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외적인 손해는 우주

36) *Ibid.*

37) 주로 불법행위지법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혁명적 방법론에 의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혁명적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崔公雄, 國際訴訟, (育法社, 1984), pp. 119-125 참조.

정거장건설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의 손해와 외부의 제3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로 나눌 수 있다.³⁸⁾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주법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ISS계획에 참가하는 국가들간에 체결된 IGA³⁹⁾에서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호포기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상호포기(cross waiver)제도를 두었기 때문이다.

우선 IGA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상호포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IGA는 제16조와 제17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IGA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포기제도는 독특한 제도이고 ISS계획과 관련된 IG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예이므로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앞으로의 조약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례이므로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법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SS계획에 참가하는 국가와 그 나라의 단체만이 관련된 경우는 제16조가 적용되고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손해가 야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는 하나 이상의 당사국 혹은 관련단체(related entities)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상호간에 이를 포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가 불법행위이나 계약이나의 여부를 불문하고⁴⁰⁾ 또한 그 과실의 정도에 대한 차이를 불문하고⁴¹⁾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상호포기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입힌 손해에는 상호포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⁴²⁾ 손해배상청구의 상호포기는 하나 이상의 당사국이나 관련단체가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하나의 국가나 단체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⁴³⁾ 즉 미국과 미국의 관련단체간의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정부와 캐나다 혹은 미국 정부와 일본과 관련된 기업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호포기된다. 반면에 한 국가와 그 국가의 관련단체사이의 손해배상은 상호포기되지 않고 해당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유럽의 당사국들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의 경우, ESA가 단일한 관할권을 가진 하나의 주권체는 아니지만 ESA를 통하여 ISS에 참가하는 두 개의 유럽회원국이나 그 관련단체들 사이의 문제인 경우라도 상호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⁴⁴⁾

38) Fans von der Dunk, *supra* note 34, p. 130.

39) *Supra* note 4.

40) IGA, Art. 16 (3) (a).

41) IGA, Art. 16 (3) (a).

42) IGA, Art. 16 (3) (d) (3).

43) IGA, Art. 16 (3) (d) (1).

관련단체에 대하여 IGA 제16조는 '(1) 그 단계를 불문하고 당사국의 계약자나 하청계약자, (2) 그 단계를 불문하고 당사국의 사용자나 고객, (3) 그 단계를 불문하고 당사국의 사용자나 고객의 계약자와 하청계약자'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⁵⁾ 이와 같이 관련단체는 그 단체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국과의 계약이나 고객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와 네덜란드기업이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네덜란드기업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관련단체가 된다. 따라서 일본이 이 네덜란드기업에 손해를 입힌다면 이 손해는 상호철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일본의 손해배상법 체계에 의해 해결된다. 반면에 이 손해가 네덜란드에 의해 야기되거나 혹은 네덜란드기업에 의해 네덜란드에게 손해가 가해진다면 이 손해배상은 IGA의 제16조에 의해 상호포기된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단체사이의 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이 일본의 실험모듈에 대한 그들의 공급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미국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미국기업은 이 하도급계약을 통해서 일본의 관련단체가 된다. 이들사이의 손해배상청구는 동일국적의 관련 단체사이의 손해배상이므로 포기되지 않고 관련 국내법에 의해 손해배상문제가 규율된다. 반면에 다른 국가의 관련단체간의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상호포기된다.⁴⁶⁾

IGA의 적용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IGA가 규정하는 “손해(damage)”의 정의와 “보호되는 우주활동(protected space operations)”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GA는 “damage”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인적 상해와 재산에 대한 손상, 재산의 손실 또는 재산사용의 손해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이익의 손실 그리고 다른 직접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인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아주 넓게 정의하고 있다.⁴⁷⁾ 보호되는 우주활동에는 발사단계를 포함하는 우주정거장의 실제적인 운영에 관련된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구상, 우주, 혹은 지구에

44) Fans von der Dunk, *supra* note 34, p. 128.

45) IGA, Art. 16 (2) (b).

The term “related entity” means:

(1)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of a Partner State at any tier;

(2) a user or customer of a Partner State at any tier; or

(3)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of a user or customer of a Partner State at any tier.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include suppliers of any kind.

46) IGA, Art. 16 (3) (a).

47) IGA, Art. 16 (2) (c).

서 우주로의 이동과정에서의 발사장치의 활동, 우주정거장의 활동, 또는 우주 화물(payload)⁴⁸⁾의 활동도 포함된다. 이것은 연구, 설계, 개발, 실험, 제조, 조립, 완성, 시뮬레이션 등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⁴⁹⁾ 또한 지상지원에 관련된 모든 활동과 안내, 통제장비 그리고 관련 시설이나 용역도 이에 포함된다.⁵⁰⁾ 덧붙혀 동조 1항은 “우주정거장을 이용한 우주의 개발, 탐사,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호포기제도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¹⁾ 이와 같이 폭넓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의 상호포기의 가능성은 우주정거장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법적 요소이다.

IG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제도는 중요한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각국의 참여가 진정한 국제적 협력이 되려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그 국적을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의 대상국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IGA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이냐에 따라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해 다른 대우를 받게된다. 이러한 결과는 진정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⁵²⁾

제3국에 의하여 또는 제3국에 대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 IGA 제17조는 “제16조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ESA와 당사국은 책임협약에 따라 여전히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Freedom과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제3국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ISS와 관련하여 제3국에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는 IGA는 일반적인 법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원칙에는 위에서 든 국제적인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법원칙 외에 기존의 우주법 특히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된 국제배상에 관한 협약(이하 책임협약)⁵³⁾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48) 우주화물에 대하여 IGA Art. 16. (2) (e)는 “all property to be flown or used in or in a launch vehicle or the Space St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9) IGA, 16 (2) (f).

50) IGA, Art. 16 (2) (f).

51) IGA, Art. 16 (1).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establish a cross-waiver of liability ... in the interest of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rough the space station. This cross-waiver of liability shall be broadly construed to achieve this objective.”

52) Fans von der Dunk, *supra* note 34, p. 129.

책임협약은 민간소유의 우주물체이나 공공소유의 우주물체이나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위 발사국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에 입힌 손해가 지구상이나 비행중인 비행물체에 가해진 것이라면 절대책임원칙이 적용되고 지구상이 아닌 곳에서 우주물체나 우주물체에 탑승한 사람이나 재산에 가해진 것이라면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된다.⁵⁴⁾ 발사국에는 손해를 야기시킨 물체를 발사한 국가, 그 발사서비스를 구매한 국가, 그리고 그 영토나 시설에서 우주물체가 발사된 국가가 포함된다.⁵⁵⁾ 이들 국가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⁵⁶⁾ 만약 정부간기구의 틀 속에서 또는 정부간기구에 의해 우주물체가 발사된 경우에는 그 국제기구 회원국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⁵⁷⁾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의 국가가 발사된 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협약은 발사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또한 지표면과 우주로 향하는 중에 공역궤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⁵⁸⁾ 또한 실패한 발사(attempted launching)도 책임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우주에 도달하지 못한 발사된 물체에도 책임협약이 적용된다.⁵⁹⁾ 이러한 책임협약의 규정은 우주법의 대현장인 천체를 포함한 외기의 이용과 개발에서의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하 우주조약)⁶⁰⁾ 제3조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으로 책임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⁶¹⁾

53)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 1971년 11월 29일 UN총회에서 채택, 1973년 10월 9일 발효, 24 UST 2389; TIAS 7762.

54) 책임협약, Art. IV (1).

55) 책임협약, Art. I (c).

56) 책임협약, Art. V.

57) 책임협약, Art. XXII; IGA, Art. 3 (b).

58) 책임협약, Art. II.

59) 책임협약, Art. I (b).

60)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1967년 1월 27일 채택, 1967년 10월 10일 채택, 18 UST 2410; TIAS 6347; 610 UNTS 119.

61) Frans von Der Dunk, *supra* note 34, p. 123.

이러한 기존의 우주법을 우주정거장에 적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장기간 운영되는 우주정거장에 발사국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국가가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점이다. 우주정거장이 발사되어 이것이 안정되어 잘 운영되면 이에 참가한 국가들은 우주정거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 각자가 국가로서 그 승계자인 구 소련지역의 공화국들이 실제적인 발사가 거의 9년 전에 있었던 Salyut-7의 파편이 1991년 2월에 아르헨티나에 낙하함으로써 인해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협약상의 발사국으로서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유럽의 국가들과 같이 ESA를 통하여 ISS계획에 미미한 몫만을 기여한 국가도 오랜 후에 이 우주정거장이 제3자에 손해를 일으킨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또한 우주정거장은 그 국제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분배와 관련해서도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Freedom 우주정거장은 여러나라가 제공한 부품에 의해 만들어지고 여러나라가 그 관할권을 행사하는 module로 구성된다.⁶²⁾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 우주정거장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 손해에 대하여 그 특정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주정거장 자체를 하나의 우주물체로 보아 우주정거장에 관여한 모든 국가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⁶³⁾ 각 module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범죄인을 재판할 권한도 가진다. 이러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논리적 귀결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발사시설을 대여하였거나 발사한 국가 혹은 발사서비스를 제공한 국가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관여한 국가로 한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주정거장 계획에 참가한 모든 국가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분담액은 책임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⁶⁴⁾ 구상권의 행사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책임협약은 어느 방법을 취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IGA에서도 각 회원국은 각국이 제공하는 비행

62) 본고의 제6장 (1) 참조.

63) 본고의 제6장 (1) 참조.

64) 책임협약, Art. IV (2).

요소를 우주물체로서 등록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⁶⁵⁾ 발사국을 각 발사물체에 대하여 한정할 수 있는지, 혹은 우주정거장에 참가한 모든 국가가 책임지고 구상권행사 과정에서 책임의 한계를 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결합이 있는 물품의 생산자는 발사국에 속하는 국가로 하여금 결합있는 물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한다. 발사국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면 이론적으로 그 국가는 하자있는 물품의 생산자에게 일종의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발사국사이의 구상권과는 달리 이러한 성격의 구상권에 대하여 책임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구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 스웨덴 그리고 영국은 그 영토에서 행해지는 발사나 혹은 그 국민에 의한 발사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국내법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⁶⁶⁾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주활동에 목적을 두지 않은 국내법률이 어느 정도나 그러한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법률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우주정거장계획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내입법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당분간은 그 실현이 쉽지 않지만 만약 사기업이 사적인 발사서비스기업을 이용하여 우주정거장의 부품을 발사한다면 현재의 우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발사가 어떤 나라의 영역밖에 있는 시설 즉 공해상의 발사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국의 사기업이 영역밖에서 제공한 발사서비스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책임협약상 발사국에 포함되는 국가는 그 영토나 시설에서 우주물체가 발사된 국가이므로 책임협약에 따른 책임은 부인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책임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임문제는 남는다. 사인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⁶⁷⁾ 다만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

65) IGA, Art. 5. (1).

66) 미국법에 대해서는 S. Grove, "The Growth of Domestic Space Law: A U.S. Example," *Journal of Space Law*, vol. 18 (1990), pp. 99-111 참조; 스웨덴의 the Swedish Act on Space Activities of 1982와 영국의 the Outer Space Act of 1968에 대해서는 J. Reifarh, "Nationale Weltraumgesetze in Europa," *Zeitschrift für Luft und Weltraumrecht*, vol. 36 (1987) pp. 3-16 참조.

절한 주의(due care)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⁶⁸⁾ 결국 이 경우에 국가가 자국민이 영역밖에서 제공하는 발사서비스로 인해 다른 국가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의무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는 것은 국제국이 그 국민의 우주활동에 대하여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6조이다.⁶⁹⁾ 이 조문이 위에서 든 책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손해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주정거장의 운영과정에서는 당사국과 다른 관련단체와의 사이의 손해이지만 우주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서 책임협약이나 IGA의 상호포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우주정거장내에서의 카메라의 판매와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우주정거장의 건설과 관련된 연구계약과 같은 것에는 IGA가 적용될 수 있지만 우주정거장의 건설과 관련이 없는 이러한 활동은 IGA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책임협약은 제3자와의 손해배상 문제 즉 외적인 손해배상 문제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인 손해배상문제를 어느법에 따라 규율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결국 그 문제에 대하여 어느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이다. 각 모듈을 이를 등록한 국가의 준영토로 보고 이에 기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와 같이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손해배상에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법원칙과 다른 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내용도 외적인 손해와 내적인 손해, 그리고 외적인 손해도 IGA의 손해배상 상호포기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과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뉘어져 다른 법적 규율을 받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67)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rt. 11 (1).

68)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rt. 11 (2).

69) State Party to the Treaty shall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 outer space ... shall requir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by the appropriate State Party to the Treaty.

6. 우주정거장의 관할권 문제

우주정거장은 인간이 장기간 우주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속에 만들어진 우주정거장은 물론이고 한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정거장도 다른 나라의 우주인 방문 등 항상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어느 법체계가 여기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주정거장은 공공지(terra communis) 혹은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우주공간⁷⁰⁾에 설치된다. 우주공간이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인 우주정거장에 대하여 어떤 국가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서도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기존의 우주법체제는 우주물체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그 국내법에 의해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도록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조약 제3조와 제8조가 그 좋은 예이다. 동조약의 제3조는 등록체제의 핵심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이것을 발사국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기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이하 등록협약)⁷¹⁾에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나의 발사국만 있는 경우에 그 국가는 그 물체를 등록함으로써 해당 우주물체의 등록국이 될 의무가 있다.⁷²⁾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발사국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 국가중의 한 국가가 등록국이 되도록 그들 사이에서 정하여야 한다.⁷³⁾ 등록국은 우주물체에 대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행사한다.⁷⁴⁾

이것은 지구상에서 국제적 요소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체제와 기본적으로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순수하게 국내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한 나라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국제적인 요소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국제법상 규율이 없으면 국가는 자율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70) 우주조약, Art. II; 달조약, Art. 11 (2).

71)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5년 1월 14일 채택, 1976년 9월 15일 발효. 28 UST 695; TIAS 8480.

72) 책임협약, Art. II (1).

73) 책임협약, Art. II (2).

74) *Ibid.*

해결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혹은 일정한 규범에 따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법이 만들어진다. 국제법적 규율이 있는데 이것과 충돌하는 국내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국제법이 우선하며⁷⁵⁾ 해당국은 국제법위반의 책임을 진다. 국제법상 규율이 있는 경우에도 국제법의 규칙은 국내법의 규칙만큼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을 통하여 국제법에 의해 만들어진 틀내의 빈 공간을 재량적으로 채울 수 있다.

국제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만 각국이 재량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관할권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정해진다. 관할권은 영토를 근거로 한 관할권인 소위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적극적 속인주의, 소극적 속인주의, 범의주의, 보편주의 등을 근거로 행사될 수 있다.⁷⁶⁾ 이 중에서 속지주의 즉 자국 내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것으로 취급된다.⁷⁷⁾ 관할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행위에 국제적 요소가 개입되면 국가는 잠재적으로 적용가능한 외국의 입법관할권의 문제를 국내적으로 다루는 그들 스스로의 체제를 국제사법이라는 명칭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우주물체에 발생하는 문제의 규율을 특정국가의 관할권행사의 문제로 처리하는 이러한 기존의 우주법이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인가의 여부는 우주정거장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우주정거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에서와 유사한 작업과 활동공간을 우주공간에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이 그 건설과 운영단계에서 항상 지구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⁷⁸⁾ 따라서 가능하면 우주정거장에 적용되는 법적구조는 지구상의 그것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우주정거장의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지구와 우주정거장의 연속적인 활동이 통일된 법적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⁷⁹⁾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등록국의 관할권행사를 통하여 우주물체에

75) *Case concerning Certain Interest in Polish Upper Silesia (Germany v. Poland)*, PCIJ, Series A, No. 7; *Free Zone of Upper Savoy and the District of Gex (Switzerland v. France)*, PCIJ, Series A/B, No. 22.

76)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London, 1992), pp. 300-305.

77) *Ibid.*, pp. 306-307.

78) *Ibid.*

79) Fans von der Dunk, *supra* note 34, p. 117.

그 국가의 국내법이 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존의 우주법의 내용은 우주정거장에도 적절하다고 하겠다. ISS와 관련하여 체결된 IGA에서도 아래에서⁸⁰⁾ 보는 바와 같이 ISS에 적용되는 법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할권의 배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우주법을 우주정거장에 적용하면 먼저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활동이 순전히 국내적이라면 그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진적으로 그 국가에 일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국제적 요소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적 규율이 있느냐의 여부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느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의 우주법은 우주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규율하지는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국가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주물체의 일종인 우주정거장에도 적용된다. 하나의 발사국만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만이 등록국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완전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 국가의 국내법은 입법적 관할권행사의 결과로서 우주정거장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확장되어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모든 법적 측면을 규율한다. 만약 이 우주정거장에 외국인이 방문한다면 영토적 관할권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관할권을 그 등록국이 행사한다. 외국인의 국적국은 인적 관할권에 기하여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며 우주정거장 등록국의 관할권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그런데 이러한 관할권의 문제는 국제적 우주정거장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해진다. 우주정거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물체로 등록될 수도 있고 각 부분이 별도로 발사되어 우주공간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등록될 수도 있다. 한 국가가 전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의 하나의 발사국이 있는 경우의 예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우주정거장의 각 부분을 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리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유일한 국제적 우주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Freedom우주정거장의 경우 각 부분별로 개별국가가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등록협약 제2조에 따라 각기 그들의 module과 부분을 등록한다. ESA의 모듈인 Columbus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등록에 관한 등록조약 제7조에 따라 ESA가 이를 등록한다.⁸²⁾

80) 각주 82-90에 따른 본문참조.

81) Fans von der Dunk, *supra* note 34, p. 126.

그리고 IGA는 각 등록국이 행사하는 관할권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우주법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IGA에서의 규정이 앞으로 있을 국제적인 우주정거장에도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선례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GA 제5조 (2)항은 제(1)항에 의해 정해진 등록국이 각 모듈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관할권을 배분하고 있다. 그리고 IGA 제5조 (2)항은 “우주정거장의 내부나 선상에 있는 자국의 국민인 사람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등록국에 대한 관할권의 배분이 다른 국가의 관할권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도 흔한 현상인 한 국가의 영토적 관할권이 그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반면에 그 외국인의 본국도 동시에 외국에 있는 자국 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⁸³⁾ 준영토적 관할권과 인적관할권이 충돌하는 경우 지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토적 관할권의 우월성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⁸⁴⁾

그런데 IGA는 특별한 규정을 통하여 Freedom우주정거장에서 각 module의 등록국이 행사하는 관할권이 지구상에서 영역국이 그 영역에 행사하는 관할권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IGA는 제5조 2항 후단에서 “관할권과 통제권의 행사는 동협정과 MOU 그리고 시행규칙(implementing arrangements)의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IGA에서 고려될 수 있는 특별규정으로 IGA 제7·9·10조가 있다. 제7조는 우주정거장 선상에서 수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각 회원국은 각자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유지와 개발 및 통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반면에 미국은 미국자신의 프로그램의 운영과 통제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협력과 우주정거장에 대한 명령 그리고 전면적인 안전기준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책임도 진다. 각 국가는 그들 자신의 프로그램의 운영 및 통제와 관련된 활동에서 미국의 전체프로그램에 대한 통제에 복종하여야 한다.⁸⁵⁾ 이 조항은 우주정거장에서의 활동은 그 활동이 일어나는 우주정거장

82) IGA, Art. 5 (1).

83) Frans von der Dunk, *supra* note 34, p. 126.

84) *Ibid.*

요소를 등록한 국가의 통제와 함께 미국이 정하는 통제에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9조는 우주정거장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우선 우주정거장의 각 모듈의 사용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⁸⁶⁾ 동조 제8항은 각국은 자기의 이용부분을 첫 번째 6개의 항과 관련 MOU규정에 따라 스스로가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동조항은 비회원국이나 비회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자에게 각국이 사용하는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Freedom의 일정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을 등록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제10조는 제7조의 규정을 보다 발전시킨 것이다. 동조는 각국으로 하여금 각국이 제공하는 요소의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안전절차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10조의 책임은 위에서 본 제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⁷⁾ 따라서 우주정거장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는 우주정거장에서 만들어지는 계약이나 상품에 관하여 미국의 전체적인 안전책임과 그 요소가 관련된 당사국이 만든 특별한 안전기준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우주법과 ISS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체결된 IGA는 우주물체의 일종인 우주정거장을 부분별로 등록하고 등록된 부분을 등록국의 준영토인 것으로 하여 이에 기한 관할권을 배분하고 있다. 다만 IGA는 우주정거장 전체의 안전과 통제부분에는 이를 담당하는 국가의 관할권과 등록국의 관할권을 중첩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에서 등록국이 행사하는 관할권과 지구상에서 영토국이 행사하는 관할권과는 차이가 있다.

형사관할권의 배분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IGA 제22조 1항은 각 회원국은 각자가 제공하는 부분과 우주정거장 모든 부분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⁸⁸⁾ 인적관할권과 토지관할권이 중

85) IGA, Art. 7 (2).

86) IGA, Art. 9 (1)-(6).

87) "...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MOUs and other implementing arrangements"

88) ... may exercise criminal jurisdiction over the flight elements they respectively provide and over personnel in or on any flight element who are their respective nationals

돌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관할권의 우월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유인기지의 안전이나 그곳의 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지가 아니고 미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미국이 형사 관할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⁹⁾ 다만 미국은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피의자의 국적국과 협의하여 피의자의 국적국이 형사소추에 동의하거나 혹은 국적국이 피의자를 스스로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⁹⁰⁾

결론적으로 우주정거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그 우주정거장이 한 국가의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국의 관할권이라는 준영토적 체제에 의해 규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여러 등록국을 가지는 국제적 우주정거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요소를 등록한 국가의 관할권에 따르지만 우주정거장의 전체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관할권행사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즉 IGA는 우주정거장 전체의 안전과 통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관할권과 해당부분 등록국의 관할권을 중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주정거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구와 유사한 작업공간을 우주에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접근방법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IGA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첩적 관할권이 국제적인 우주정거장에 꼭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Freedom 우주정거장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우주법과 IGA에서 우주정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은 우주정거장을 그 등록국의 준영토로 취급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비추어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2)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관할권

우주정거장의 활동 특히 관할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지적 재산권의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제도는 선구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한 자를 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일정기간 보호하여 창조적인 노력을 촉진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89) IGA, Art. 22 (2) 전단.

90) IGA, Art. 22 (2) 후단.

의 보호는 우주정거장상에서의 창조적인 작업에는 물론이고 우주정거장에서 지구상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한 나라만 관련된 우주정거장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을 우주정거장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하거나 혹은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우주정거장의 경우에는 그 관할권의 복잡성 때문에 다소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등록국에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우주법과 ISS와 관련하여 체결된 IGA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각국이 자국의 등록부분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IGA 제21조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동조 제2항은 “제21조의 목적상 우주정거장 비행요소의 내나 그 위에서 발생하는 활동은 그 요소가 등록된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¹⁾ 그리고 우주정거장의 자국등록부분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이나 자국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특허법을 적용할 수 있다.⁹²⁾ 이를 통하여 IGA의 제21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우주정거장과 그 부분을 관련국의 준영토로 취급하고 있다. 지구상의 영토와의 차이점은 각 국내법이 지구상의 영토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반면에 우주정거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 또는 개정에 의해서 우주나 최소한 우주정거장에 확대적용되는 것이 명시적 혹은 해석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등록의 우주정거장 부분에서 만들어진 발명에 적용되도록 이미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하였다.⁹³⁾ 우리나라가 우주정거장계획에 참여할 때에 국내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분야이다.⁹⁴⁾

IGA는 ESA가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당사국에게 ESA의 등록부분을 개별국가의 영토로 취급할 수도 있고 일종의 ESA영토로 취급할 수도 있도록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⁹⁵⁾ 현재 우주정거장의 ESA 등록부분에서 발생한 것을 자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하는 국

91) 동조 제2항 전단.

92) IGA, Art. 21 (3).

93) The Space Patent Act of 1990, P.L. 101-580 (Nov. 15, 1990) section 105.

94) 본고의 각주 1에서 든 ES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pace Activities in Europe*이라는 책자는 유럽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로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입법조치를 고려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5) IGA, Art. 21 (2) 중단 “... for ESA-registered elements any European Partner State may deem the activity to have occurred within its territory.”

가는 독일이 유일하다. 그러나 개별영토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유럽국가에서 배상을 구하지 못한다.⁹⁶⁾ ESA에 대하여 이러한 특별규정을 둔 이유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ESA의 독특한 제도 때문이다. ESA협약⁹⁷⁾은 “ESA는 발명과 기술적 자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관련 회원국 그리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과 기관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⁸⁾ 이 조문은 각국의 지적재산권을 우주에 적용하는데 있어 ESA회원국을 하나의 영토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IGA의 제21조가 우주정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자료권과 기술이전의 장벽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의 수출입에 관한 규제체제 등의 문제는 IGA 제21조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주정거장의 각 부분이 등록국의 준영토이고 국내법률을 이러한 준영토에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권의 분할을 통한 우주정거장의 등록체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적 우주정거장이든 국제적 우주정거장이든 구별없이 우주정거장에서의 지적재산권문제는 각 등록부분을 등록국가의 준영토인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결 론

이상에서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우주법, ISS계획과 관련하여 체결된 IGA의 규정을 살펴 보았다. 기존의 우주법에서는 우주정거장을 각 부분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 발사국에 무기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책임협약을 우주정거장에 적용하는 문제점, 그리고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외적 손해에서 발사국간의 손해액 분담과 사인에 대한 구상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IGA

96) IGA, Art. 21 (4).

97)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Space Agency, done May 30 1975, entered into force Oct. 30, 1980. For the full text see K.H. Böckstiegel & M Kenko (eds.), *Space Law: Basic Legal Document*, C 1. 1.

98) ESA설립조약, Art. III (3).

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상호포기라는 특수한 제도와 우주정거장에서 관할권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미국과 각 부분의 등록국이 중첩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우주정거장과 관련된 법제는 상당히 복잡하여 통일적인 이해가 쉽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가상적인 사실은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적인 사실만의 분석에서도 손해배상제도, 관할권의 분배 등에서 이미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은 우주정거장사업에 참석하려고 계획하는 자에게는 법적 명확성의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 부분적인 사실에서도 손해배상이라든지 관할권배분에서 기존의 법체계와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인해 우주정거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또 새로운 법제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적 명확성을 더욱 떨어지게 한다.

손해배상의 상호포기제도와 관할권의 중첩적 행사는 나름대로의 이익에 기여한다. 그러나 법적 명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구공간과 유사한 작업공간을 우주에 만든다는 우주정거장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주정거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의 대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인 제도를 좁게 인정하는 접근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 기존의 우주법과 IGA는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정거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의 대원칙의 萌芽는 보이고 있다. 등록국의 준영토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대원칙속에서 앞으로 제기될 법적인 문제가 처리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에 우주정거장에 대한 법적 흠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GA의 특별제도가 부분적인 혹은 일시적인 이익이 법적 명확성이라는 이익보다 보다 중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에 관하여 미흡한 법제도를 앞으로 보완할 때에도 법적 명확성이라는 이익을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한다.